

## 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50호 1998. 9. 29

### 개 정 이 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을 정함으로써 화재 등 사고발생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서식을 새로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 계획·건축구조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위원회  
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의2).
- 나.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대피를 위하여 단란주점 또는 극장 등 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비상 탈출구의 구조기준을 정함(제  
33조의2)
- 다.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그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자재의 범위에 석고시멘트판·섬유강화시멘트판 등 표준화규격으  
로 정비된 9개 품목의 자재를 추가하여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함(별표  
10).

라. 시장·군수 등 도시설계 작성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도시설계의 범위중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의 경우 그 범위를 100분의 10이내의 변경에서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으로 이를 확대하는 등 도시설계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함(별표 12)

〈건설교통부 제공〉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조경 등 기타 분야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

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4항 본문중 “허가를 받고자”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3호중 “도서”를 “도서(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건축허가서”를 “건축허가서나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로 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서 및 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미관지구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 영 제 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  
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  
상으로 할 것
-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  
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  
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  
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  
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  
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  
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  
로 통하는 복도 또는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  
터이상으로 하고, 피난 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  
연재료로 할 것
-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  
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 구비서류란을 다  
음과 같이 한다.

구 비 서 류	1. 구조도 1부 2. 배치도 1부
---------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  
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  
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  
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  
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부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0] 건축재료(제32조 관련)

구 분	건 축 재 료
구조체 재 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콘크리트 벽돌</li> <li>2. 점토벽돌</li> <li>3. 속빈 콘크리트블록</li> <li>4. 경량 기포 콘크리트블록</li> <li>5. 경향 기포 콘크리트패널</li> <li>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li> <li>7.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li> <li>8.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피시 말뚝</li> <li>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li> <li>10. 일반구조용 탄소강관</li> <li>11. 일반구조용 각형강관</li> <li>12. 조립식 콘크리트 벽판</li> <li>13. 조립식 콘크리트 바닥판</li> <li>14. 조립식 콘크리트 지붕판</li> <li>15. 연소재 벽돌</li> </ol>
마감재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통합판</li> <li>2. 도자기질 타일</li> <li>3. 플로어링 보도</li> <li>4. 치장 목질 플로어링 보드</li> <li>5. 석고보드 제품</li> <li>6. PVC(비닐)계 바닥재</li> <li>7.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외부용)</li> <li>8. 합성수지 에멀전 페인트(내부용)</li> <li>9. 광명단 조합페인트</li> <li>10. 조합페인트</li> </ol>

구 분	건 축 재 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li> <li>12. 투명락카</li> <li>13.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li> <li>14. 알키드 수지 바니쉬</li> <li>15. 스파 바니쉬</li> <li>16. 섬유 강화시멘트판</li> <li>1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li> <li>18. 자연 건조용 알키드 수지 광택 에나멜</li> <li>19. 석고시멘트판</li> </ol>
<p>기계설비 재 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꼭지</li> <li>2. 청동밸브</li> <li>3. 배관용 탄소강관</li> <li>4. 나사식 가단 주철제 이음쇠</li> <li>5.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이음관</li> <li>6.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li> <li>7. 일반 배관 및 연료가스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li> <li>8. 기름연소 온수보일러</li> <li>9. 가스보일러</li> <li>1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li> <li>1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li> <li>12. 볼밸브</li> <li>13. 수도용 제수밸브</li> <li>14. 주철밸브</li> <li>15. 파이프서포트</li> <li>16. 벨로우주형 신축 관이음</li> <li>17.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li> <li>18.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li> <li>19.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li> <li>20. 수도용 폴리에틸렌 관</li> </ol>

구 분	건 축 재 료
	21.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22. 강제 용접식 플렌지 23. 난방용 방열기 24.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프레스식 관이음쇠 25. 폴리에틸렌 이음쇠 26. 동합금 납땀 관이음쇠 27.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건기설비 재 료	1.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2. 옥내용 소형스위치 3. 배관용 꽃음접속기 4. 경질 비닐 전선관 5. 강제 전선관 6.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8. 형광램프(일반조명용) 9. 소켓 10. 누전 차단기 11. 배선용 차단기 12. 주택용 분전반 13. 푸러쉬 플레이트 14. 노멀밴드(경질 비닐전선관용) 15.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16.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시내 쌍케이블 17.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18. 매입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창호·철물 ·기타재료	1.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2. 합성수지 창 및 창틀 3. 강철제 창 및 창틀 4. 목제미서기 창 및 창틀

구 분	건 축 재 료
	5.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6. 문세트 7. 플로어 힌지 8. 도어 클로우저 9. 정첩 10. 원통형·튜브리형 및 상자형 도어록 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2. 황동줄눈대 13. 황동논슬립 14. 접합유리 15. 강화유리 16. 복층유리 17.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19.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20.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21.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 골판 22. 속빈 유리블록

(별표 12) 도시설계의 경미한 변경(제38조관련)

구 분	도시설계변경의 범위
블록의 면적	10/100이내의 변경
대지안의 공지	30/100이내의 위치변경
건축물의 높이	30/100이내의 증감
건축물의 형태 등	위치·모양·색채 등의 변경
공공조경	수종·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변경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기존건축물의 활용·정리에 관한 사항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0.5미터이내의 변경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건축주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설계자	④ 성 명			⑤ 면 허 번 호	제 호
	⑥ 사무소명			⑦ 등 록 번 호	제 호
	⑧ 주 소	(전화 : )			
⑨ 대지위치					
⑩ 지 역			⑪ 지 구		
⑫ 건축면적			⑬ 연 면 적		
			m <sup>2</sup>	cm <sup>2</sup>	
⑭ 주 용 도			⑮ 부속용도		
⑯ 구 조			⑰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⑱ 용 도 변경내용	구분층별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면 적(m <sup>2</sup> )	용 도	면 적(m <sup>2</sup>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 <input type="checkbox"/> 허가신청을(를) <input type="checkbox"/>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 서(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뒷 쪽)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외의 용도를 별표 16 각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li> <li>·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li> </ul>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제1항 및 제83조).</li> </ul>		
<p>※ 작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⑧항은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li> <li>⑫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 되, 지상 1미터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 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li> <li>⑬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li> <li>⑭·⑮ 및 ⑱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li> </ul>			

[별지 제5호의2서식]

용도변경  허가서  
 신고필증

- 허가(신고) 번호 :
- 건축 위치 :
- 건축 주 :
- (주 소 : )
- 용도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용도	면적(m <sup>2</sup> )	용도	면적(m <sup>2</sup> )

귀하께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를) 한 사항은 건축법령의 각  
 신고

기준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서 를(을) 교부하오니 설계도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